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나20037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나200372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7가합1046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명재

변론종결 2021. 12. 3.

판결선고 2022. 1. 28.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7가합104680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수증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31년 이상 망인과 부부로 동거하면서 경제공동체로 살아왔으므로, 망인 사망 이후에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재산은 모두 피고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근거 규정으로서, 상속인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불과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이를 적용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재령, 판사 심영진